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

-가상통화 화폐인가? 재화인가?-

좌 장

국회의원 박용진

발 제

정순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

홍기훈 교수(홍익대 경영학부)

이대기 박사(금융연구원)

김진화 이사(코빗)

한경수 변호사

김연준 과장(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이종근 부장검사(수원지검)

채원희 대표(가상화폐피해자모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상통화 이용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는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시장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에 쓰이고 있는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서 제2의 인터넷혁명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투기적인 시장움직임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무분별하게 투기행위에 나서고 있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또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가상통화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런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한시 바빠 법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발제자이신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비롯하여 토론자로 업계와 학계 및 관련 정부부처의 관계자분들과 가상통화피해자모임 대표도 모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입법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입법작업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제자,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18.
국회의원 박용진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

가상통화 화폐인가? 재화인가?

발 제

가상통화 규제의 기본방향

· 정순섭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1. 배경

- 산업측면에서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
- 국제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
 - FATF와 G7 등
 - 가상통화는 이전의 신속성과 용이성, 익명성으로 자금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지적(FATF, Virtual Currencies Key Definitions and Potential AML/CFT Risks, June 2014)
 - “We will take further actions to ensure greater transparency of all financial flows, including through an appropriate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ies and other new payment methods.”(Leaders’ Declaration G7 Elmau Summit 7-8 June 2015)
 - “Recommendation 14 directs countries to register or license natural or legal persons that provide MVTS in the country, and ensure their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AML/CFT measures.”(FATF,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VIRTUAL CURRENCIES, June 26, 2015)
 -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입법(국가별로 다양한 접근)
- 국내에서도 가상통화거래량의 급증과 함께 대규모 이용자 손실사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
 - “가상화폐 분석 전문 업체 크립토킴페어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세계 비트코인 시가 총액은 451억5000만달러(약 51조원), 이더리움은 302억5000만달러(약 34조원)에 이른다.” “세계 비트코인 시장에서 한국 원화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8% 정도다. 미국(36.7%), 일본(21.6%)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전자신문 2017.6.25 보도.

2. 문제의 범위

가. 기술발전과 지급수단

- 산업측면에서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
- “혁신적인 기술”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나. 법규제상 문제의 제기

- 가상통화를 비롯한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은 다양한 법규제상 문제를 제기
- 금융규제법상
 - 은행법과 지급결제업무
 - 이용자보호
 - 금융범죄(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범죄수익은닉)
 - 조세
 - 외환규제
 - 금융안정
 - 통화안정
- 지급결제, 이용자보호, 금융범죄의 3 가지 관점만 검토함

3. 용어의 정리

가. 법화(legal tender)

- cf. 법정화폐
- 법화는 발권력의 독점(통화고권) + 강제통용력을 그 요소로 함
- 법화 이외의 지급수단은 발행주체 및 강제통용력의 부재로 법화에 해당할 수 없음
- 민법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당사자간에 사용될 수 있는 변제방법의 하나

나. 암호통화 디지털통화 가상통화

- Cryptocurrency; Digital currency; Virtual currency
- 각국의 입법상 법률용어로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가 사용되는 추세

다. 지급수단

- 법령상 지급수단으로서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수단이나 상품

II. 가상통화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가상통화의 의의와 범위

가. 의의

- (1) 교환의 수단
- (2) 발행인이나 관리인의 부재(유무는 불문)
- (3) 전자적 수단

2. 가상통화의 법적 성질

가. 통화 또는 외국통화

- 법화(통화고권에 의한 발행 + 강제통용력)에 해당할 수 없음

나. 증권

- 증권에 해당할 수 없음
- 발행인의 부재 + 발행인의 신용과 무관
- Cf. 탄소배출권과 비교

다. 자산에 대한 투자

- 재산적 가치의 기준?

라. 지급수단

- 법령상 지급수단 이외에도 당사자간의 사적 합의에 기초한 변제방법으로의 활용 가능성은 있음
- 국가에 의한 가치보장기능이나 발행인 등 관련자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경우로서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전성이 불명확
-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전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지급수단을 법령상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당사자간의 사적 계약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음

3. 지급수단의 규제와 통화법의 변화

1) 법화의 역할 감소

- 전통적 지급수단인 법화의 역할 감소와 통화법의 의미
 - 전통적인 통화법의 분야로서 발권력의 독점 + 강제통용력을 그 요소로 함

〈1〉 법화의 강제통용력에 한계를 두는 경향

- 주화의 강제통용력에는 한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주화의 법화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도를 규정(일본 통화의 단위 및 주화의 발행등에 관한 법률 7조, 영국Coinage Act 1971, Art 2(1), 호주 Currency Act 1965, Act No. 95 of 1965, Art 16(2), 캐나다 Currency Act, R.S.C., 1985, c. C-52, Art 8(2))
 - 우리나라는 주화의 법화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일정한 금액 한도를 두는 방식은 채택하고 있지 않음
- 최근 국내에서는 체납임금 18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진정한 근로자에게 체납임금을 10원짜리로 바꿔 지급한 업주에 대한 보도
 - 이 문제에 대하여 국내법은 민법상 변제방법의 적정성의 문제로 보고 있음
 -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고액의 금전채권을 소액의 주화로 변제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것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화로서의 강제통용력을 이유로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
 - 따라서 통화법상 법화로서의 강제통용력 자체를 소액으로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
- 고액 현금결제의 제한
 -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급에 대해서는 비현금 지급수단, 예컨대 계좌이체를 이용하도록 의무화
 - 벨기에는 상인들에게 고객들로부터 이체를 받기 위한 계좌의 보유를 의무화하고, 상거래에서 1만 벨기에 프랑 이상의 지급을 위하여 은행이체나 수표의 수령을 의무화(Royal Decree 56 of 10 Nov. 1967)
 - 프랑스는 5천 프랑을 초과하는 지급에 대하여 은행이체나 수표의 수령을 의무화(L. 22 October 1940)

〈2〉 새로운 지급수단의 등장과 함께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은 감소

- 전통적 통화법의 지급결제법으로의 변화
 - 발행권의 독점을 포기하고 강제통용력의 지정을 통화법의 내용으로 인식하지는 주장

2) 은행 이외의 기관에 의한 지급결제

〈1〉 금융투자업자(예탁금계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
-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2〉 전자지급수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11.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3〉 통신사업자의 통신과금서비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 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
 - 나.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4〉 외화이체업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환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지수표의 매입
 -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 3.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

〈5〉 보험회사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109 제출연월일 : 2008. 12. 18. 제 출 자 : 정부)
제11조(보험회사의 경영업무) 보험회사는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그 업무를 시작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금이체업무 [임기만료 폐기]

Ⅲ.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입법례

1. 개관

- 가상통화에 관한 외국입법례로는 미국과 일본의 법제도를 비교 검토함.
- 각국별로 다음 쟁점을 검토함
 - 가상통화의 정의
 - 업규제
 - 업무규제
 - 이용자보호

2. 미국

가. 서언

- 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 STATE REGULATORY REQUIREMENTS FOR VIRTUAL CURRENCY ACTIVITIES CSBS MODEL REGULATORY FRAMEWORK September 15, 2015
- 뉴욕
 - 23 NYCRR Part 200 Virtual currencies, June 3, 2015
 - 가상통화업에 대한 인가제 도입
- 캘리포니아, 코네티컷주 등

나. 가상통화의 정의

- 가상통화는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어 교환수단이나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이용되는 모든 디지털단위를 포함함(23 NYCRR 200.2(p))
 - 중앙저장소나 관리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컴퓨팅이나 제조 노력의 결과물인 경우도 포함함
- 온라인게임플랫폼에서만 사용되거나 고객보상프로그램의 일부이거나 선불카드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 등록제의 도입

- 가상통화영업행위(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의 정의(23 NYCRR Part 200.2(q))
 - 이체를 위한 가상통화의 수취나 가상통화의 이체. 다만 비재무적 목적으로 명목금액 이상의 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제외
 - 타인을 위한 가상통화의 저장, 보유, 보관이나 지배의 유지
 - 대고객 업무로서 하는 가상통화의 매매
 - 가상통화의 지배, 관리 또는 발행.
- 금융증개기관으로 기능하는 자만을 대상
 - 소프트웨어개발업자, 가상통화채굴자 등은 등록을 요하지 않음
- 원칙적으로 고객 자금을 보유하는 업자만을 대상

라. 업무규제

1) 최저자본규제

- 등록업자는 감독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본금을 유지해야 함(23 NYCRR 200.8)
- 명시적인 최소금액기준은 없지만 감독기관이 등록업자의 총자산과 부채, 실제 및 예상 영업규모, 다른 법률상 규제의 적용 여부, 등록업자의 레버리지 금액, 등록업의 유동성, 등록업자가 신탁계정이나 보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재무적 보호, 등록업자가 업무를 제공할 상대방의 형태, 등록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형을 고려하여 판단

2) 기록유지 등

- 등록업자는 엄격한 장부 및 기록유지의무를 부담함 (23 NYCRR 200.12)
- 등록업자는 모든 장부와 기록을 최소 7년간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함

3) 사이버보안

- 등록업자는 사이버보안프로그램의 구축 및 유지의무를 부담함(23 NYCRR 200.16)
 - 특히 업자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저장된 민감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규정한 서면 사이버보안정책을 이행해야 함
 - 최소한 연1회 전자시스템에 대한 침투시험과 최소한 연4회 시스템의 취약성평가를 하고
 - 그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준법감시인을 임명해야 함

4) 이용자 보호

- 등록업자는 이용자보호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담(23 NYCRR 200.19)
 - 상품, 서비스 및 영업에 관한 모든 주된 위험의 공시
 - 신규계좌 개설 시 상품, 서비스 및 영업에 관한 모든 관련 조건의 공시
 - 개별거래전에 거래의 조건의 공시

마. 자금세탁방지

- 일반적인 자금세탁규제 외에 (USA PATRIOT Act of 2001, Bank Secrecy Act of 1970), 등록업자는 뉴욕주의 자금세탁방지요건을 준수해야 함
 - 영업에 관한 최초위험평가와 연1회 추가위험평가의 실시
 - 자금세탁방기관 관련 준법감시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유지
 - 자금세탁방지프로그램에 대한 준법감시관련 독립적인 테스트의 제공 등
- 등록업자는 연방규제기관에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뉴욕주 당국에 제출할 의무 면제
- 등록업자는 자금세탁방기관 관련 일상적인 준법업무수행자의 지정, 서면절차의 작성 및 이행, 관련직원의 연수와 교육, 가상통화의 지급·수취·교환·환전·매입·매도·이체 등에 관한 정보의 기록과 유지의무도 부담

3. 일본

가. 서언

- 정보통신기술의 진전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통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2016. 5.25. 성립 6. 3. 공포)
- 가상통화에 관하여 국제적인 권고 등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도입
- 가상통화와 법화의 교환업자에 대하여 등록의무와 행위규제를 도입
- 이용자가 예탁한 금전이나 가상통화 등의 분별관리의무를 부과
-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규제를 도입

나. 가상통화의 정의

- (1) 물품을 구입하거나 차입하거나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은 경우에, 그 대가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고,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구입 및 매각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과 (2)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위 (1)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로서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2조 5항 1호 2호)
 - 전자기기 그 밖의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 한정
 - 통화 및 외국통화, 예금이나 채권 등 통화표시자산을 제외함

다. 등록제의 도입

- 가상통화는 발행인이나 관리인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가상통화와 법화의 매매 등을 하는 교환업자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 가상통화교환업은 “가상통화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가상통화와의 교환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제2조 제7항 1호-3호)
 - ‘교환 등’은 (1) 가상통화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가상통화와의 교환, (2) 이러한 행위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3)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금전 또는 가상통화의 관리를 하는 것
 - (1)은 이용자의 매매의 상대방이 되어 직접 판매등을 하는 판매인의 업무를, (2)는 이용자들에게 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거래소업무를, (3)은 이러한 업무에 관한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각각 의미
- 교환업자는 재무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하면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상 규제의 적용대상이 됨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라. 업무규제

- ① 가상통화교환업자는 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3조의8)
- ② 가상통화교환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이용자의 보호와 업무의 적정 및 확실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3조의10)
 - 교환업자는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1) 업자가 취급하는 가상통화와 국내통화 및 외국통화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 (2) 수수료 그 밖의 가상통화교환업에 관한 계약의 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수취증서의 교부, (4) 이체사기 등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의 거래정지 등의 조치, (5) 인터넷거래를 할 경우의 오인방지 및 과오방지조치, (6) 사내규칙 등의 정비 등이 요구됨(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제16조-제19조)

- 위 (1)의 오인방지를 위한 설명의 내용으로는 (i) 취급하는 가상통화는 국내통화나 외국통화가 아닌 점, (ii) 취급하는 가상통화가 특정인에 의하여 그 가치가 보증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취지, 또는 특정인에 의하여 그 가치가 보증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성명, 상호 또는 명칭 및 그 보증의 내용, (iii) 그 밖에 취급하는 가상통화와 국내통화 또는 외국통화의 오인방지에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사전에 이용자에 대하여 서면의 교부 그 밖의 적절한 방법에 의한 설명이 필요함을 규정(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제16조)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i) 가상통화교환업자의 상호 및 주소, (ii) 가상통화교환업자인 취지 및 그 교환업자의 등록번호, (iii) 그 거래의 내용, (iv) 취급하는 가상통화의 개요, (v) 취급하는 가상통화의 가치의 변동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vi) (v)의 사유 이외에 그 거래에 관하여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이유, (vii) 분별관리방법 및 예금은행 등의 성명이나 상호 또는 명칭, (viii) 이용자가 지급할 수수료, 보수, 또는 비용의 금액 또는 상한액 및 그 계산방법, (ix) 이용자로부터의 고충 또는 상담에 응할 영업소소재지 및 연락처, (x) 그 거래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 및 그 환산에 사용된 표준 또는 그 계산방법, (xi) 금융ADR의 내용, (xii) 그 밖에 그 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사전에 이용자에 대하여 서면의 교부 그 밖의 방법으로 설명할 필요를 규정(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제17조)
 - ③ 가상통화교환업자는 이용자가 교환업자에게 예탁한 금전이나 가상통화 등 이용자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그 구분관리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함(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3조의11;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20조-23조)
 - ④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하여 금융분야에서 재판외분쟁해결제도를 두고, 분쟁해결기관과의 사이에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3조의12, 제99조-제101조)

마. 감독규정의 정비

-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하여 장부서류 및 보고서의 작성,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보고서의 제출, 현장검사, 업무개선명령 등의 감독규정의 근거를 규정함(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제63 조의13-제63조의19)

바. 자금세탁방지 등

- 가상통화교환업자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 특정사업자로 지정되어 동법상 거래시확인 의무, 확인기록 및 거래기록의 작성·보존 의무, 의심거래의 신고 의무, 태세정비 의무가 부과됨

Ⅳ. 가상통화 규제의 기본방향

1. 기본방향

- 〈1〉 단기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히 규제
- 〈2〉 동시에 새로운 지급수단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
- 〈3〉 장기적으로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적 규제법 제정 필요성

2.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히 규제

가. 부정거래수단으로의 악용 방지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금지(이용자 보호)
- 투자나 저축, 위험관리를 포함한 금융거래목적으로 특정한 상품이나 거래 또는 수단을 권유할 때 ‘통화’, ‘화폐’, ‘지급수단’ 또는 이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문자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
 - 한국은행법상 법화(은행권과 주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 및 외국환거래 및 통화관련파생상품거래는 제외
- 당사자간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비금융목적의 일반적인 유통이나 사용 자체를 금지할 필요는 없음
- 관련법률로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나.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범죄수익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

- 관련법상 적용범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동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의 정의
 - 제2조 제2호; 동 시행규칙 제2조 금융거래의 정의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 범죄수익의 정의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호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의 정의

3. 새로운 지급수단의 발전 가능성을 보호 육성할 필요

가. 광의의 지급결제업무

- 격지자간의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자금이동업무
- 은행법상 은행업과의 구분
 - 은행법상 예금을 지급수단으로 하는 지급결제업무(협의의 지급결제업무)는 은행의 배타적 고유업무
 - 비예금 지급계좌 발행 및 판매업무 ⇔ 예금과의 명확한 경계구분이 필요

나. 금융규제법상 규제대상으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

<1> 금융규제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 금융규제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이나 거래 또는 수단에 대하여 이용자의 보호와 시스템위험의 방지를 목적으로 적용됨
 - 현재 거래되는 가상통화를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첫째,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상통화에 대하여 금융규제의 대상인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임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의 편입은 대상 가상통화의 범용성과 안전성 요건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임
 - 현재의 지식과 경험으로 가상통화에 대하여 금융규제상 유의한 판단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
 - 지급결제수단, 지급결제업무, 지급결제업자,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법을 입법한 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고려할 필요
- 둘째, 가상통화에 관한 교환 등의 행위를 규제대상 금융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셋째, 규제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분석도 필요
 - “새로운 시장발전에 대한 장애요인” v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
 - 규제의 정도와 수준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

〈2〉 자금세탁방지 등 법체계에 수용하기 위한 규제단위는 필요

- 자금세탁방지 등 법체계에 가상통화 및 그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및 그에 관한 영업행위를 규정하는 규제단위가 필요함

다. 금융규제법상 업규제를 할 경우 고려사항

1) 규제목적

- 금융목적거래인 경우 거래의 일방당사자를 규제대상 업자로 한정하여 이용자를 보호

2) 적용범위

- 가상통화의 정의 :
 - 지급수단으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에 엄격하게 한정
 - 현재의 지식과 경험으로 유의한 판단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지 / 다른 지급수단과의 구별
 - 법률상 지급수단의 의의
 - 한국은행법상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법화(48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거래거절에 형벌이 적용되는 신용카드(19조 1항)를 제외하고는
 - 민법상 당사자간의 변제방법에 관한 합의에 기초하여 변제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
 - 지급수단의 안전성 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 가상통화교환업의 정의 :

3) 진입규제

- 진입규제를 등록으로 할 것인지 인가로 할 것인지? / 최저자본규제 등

4) 업무규제

- 이용자의 보호 : 정보제공 / 재산 보호(분별관리 등)
- 시스템보안 등

5) 입법시기와 형식

- 입법과제를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 입법형식을 기존 개별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것인지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검토할 것인지

4.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적 규제법 제정 필요성

- 수단의 종류를 불문하고 (전자적 비전자적 수단을 구별하지 않음)
 - 지급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금융상품/수단/거래에
 - 동일한 기본원칙에 따른 규제 적용하는
 - 자금결제법 제정 필요
- 시장에 새로이 등장하는 지급수단을 법률상 지급수단으로 편입할 것인지 여부는 자금결제법에서의 일반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공청회

가상통화 화폐인가? 재화인가?

토론

-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이대기 | 금융연구원 박사
- 김진화 | 코빗 이사
- 한경수 | 변호사
- 김연준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 이종근 | 부장검사(수원지검)
- 채원희 | 가상화폐피해자모임 대표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 개정안을 만드는데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느낌을 받았고 가상통화에 대한 실질적인 개정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

 -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통화들은 화폐로 만들어 졌으나 전자자산으로 이용되고 있는 딜레마 존재.
 - 화폐로 규정하기에는 현상이 부족하고 자산으로 규제하기에는 원 목적에서 벗어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정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

- ▣ 다른 국가의 규제, 과세방안, 규제 목표라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

- ▣ 다른 국가들의 규제방안이 중요하기는 하나 규제는 국가마다 목표, 관점, 히스토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외국의 규제가 무조건 우월하다 여기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음.

 - 본 개정안은 가상통화를 통화로 이해하고 작성되었다고 생각.
 -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상통화가 새로운, 투기적인, 투자처로 여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음.
 - 그렇다고 가상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가상통화로 쓰인 실제사례가 부족하고 그에 대한 이해도 부족.
 - 그러므로 가상통화 자체의 규제보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주고 다룬다는 측면에서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생각.

- ▣ 과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불리 모든 것을 결정하기 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세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적 정책조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

- ▣ 본인의 생각에, 규제란, 공정한 룰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공의 이익을 도출해 내는 것이 그 목적이라 생각.

 -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 가상통화 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아 문제이고 정책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꼭 옳지만은 않음.
 - 규제는 공정한 룰을 제시하고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특정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 ▣ 본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면 가상통화를 통화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비즈니스를 규제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과세부분에 대한 논의가 약간 부족한 점은 아쉬움. 다만 왜 부족한지는 이해가 가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본 규제가 무조건적으로 가상통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지는 규제가 아닌 공정한 룰을 제시하여 업계의 영업활동에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해외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 현황과 시사점

이대기 | 금융연구원 박사

1. 가상통화 규제의 목적과 체계

-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통화 거래업체의 인허가 및 감독 등을 포함하는 직접 규제체계를 마련한 것은 가상통화가 불법거래에 빈번히 활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데 기인
- 가상통화 규제도입의 주목적은 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방안 마련과 함께 ② 이용자 보호에 있음
- 규제체계는 ① 가상통화의 정의, ② 인가대상 업무, ③ 인가(등록) 및 감독 관련 사항, ④ 이용자보호, ⑤ 자금세탁 또는 불법자금거래 방지, ⑥ 보안 관련 책무 등으로 구성
- 주요국은 불법자금거래 및 이용자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금세탁방지업무 중심으로 가상통화 규제정책을 시행
 - 가상통화를 부분적으로 화폐를 대신하는 민간의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가상통화를 공식 화폐로 지정하거나 법정화폐(legal tender)로 인정한 것은 아님.

2. 국가별 규제 현황

- 가상통화의 대표적 사례로 비트코인(Bitcoin)이 있으며, 현재 각 나라별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및 운영현황이 다양함
- 미국은 별도의 비트코인 규제법규를 두지 않고 개별 기관들이 그 관할영역에 대해 권한행사 여부를 검토 중
 -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실크로드 사건 이후 '13년 3월 18일 가상통화 규제를 위한 'FinCEN의 가이드라인'¹⁾을 발표
- '14년 3월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은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기준 가이드라인²⁾을 공포
 -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를 통화가 아닌 주식과 같은 재산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거둔 수익에 대해 더 높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대신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

1) FinCEN,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2013.

2) IRS, “Guidance on the Tax Treatment of Bitcoins”, Notice 2014-2, 2014.

- EU의 경우 비트코인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으나 '14년 3월 비트코인을 유러피안 아젠다에 상정하려는 최초의 시도가 이루어짐³⁾
 - 전문가들은 별도의 비트코인 규정을 두기보다는 기존의 지급 및 전자화폐 프레임워크와 반자금세탁규정들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
-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은 '13년 7월 은행법(Banking Code)에 있는 금융상품의 개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규정됨⁴⁾
 - 비트코인을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또는 독일 지급 서비스규제법(German Payment Service Regulation Act)에 의한 계좌의 단위(units of account)로 규정
 - 이에 따라 비트코인 업체들은 금융기관에 준하는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됨
- 독일은 비트코인이 금융규제 대상이 되면서부터 거래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짐
 - 비트코인 형태의 금융상품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던 중 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람에게는 25% 세율의 자본이득세 부과
- 일본 정부는 '14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규제방침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 과세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 가이드라인 초안은 비트코인의 성격, 금융기관 규제, 세금부과규정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귀금속 등과 같은 '일반상품'(commodity)으로 취급
 - '16년 5월 「자금결제법 개정안」에서는 가상통화의 음성적인 사용을 차단하고 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전자결제, 송금 등 일반 화폐로서의 기능도 부여

3. 가상통화의 성격별 과세 논의

- 가상통화의 과세와 관련된 주요국 사례를 보면, 가상통화의 성격을 자산으로 분류하는데 큰 이견이 없으나, 가상통화의 통화적(거래매개체)성격 인정 여부에는 차이가 나타남
 - 새롭게 등장한 가상통화를 일종의 새로운 '자산'으로 정의해 각 국별로 기존에 존재하던 자산관련 세법 적용
 - 하지만, 가상통화의 통화적(거래매개체)성격 인정 여부에 따른 관련 과세 규정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함
 - * 미국, 영국, 스페인의 경우, 가상통화를 통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면제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이를 '서비스의 공급'으로 분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부과

3) Marcin Szczepański, "Bitcoin market, economics and regulation", Briefing, EPRS, 2014.4.11.

4) Stefan, "Germany Sets Standard for Bitcoin Regulation", 2013.

(<https://bitcoinmagazine.com/articles/germany-sets-standard-for-bitcoin-regulation-1376915552>)

- 가상통화를 ‘자산’의 성격으로만 분류한 국가와 ‘자산 및 통화(거래매개체)’ 성격을 모두 인정해 분류한 국가로 나뉘며, 그에 따라 과세 규정도 달라짐
 - 가상통화를 ‘자산 성격’으로 분류한 국가와 ‘자산 및 통화(거래매개체)성격’으로 분류한 국가 모두 자산 측면의 과세규정(소득세, 법인세 등)은 유사함
- 하지만, 가상통화 거래 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선 ‘자산성격’으로만 분류한 국가는 과세실시
 - 가상통화의 통화적 성격을 인정한 국가군의 경우 가상통화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표 1〉 각국의 비트코인 규제 현황

규제대상/금지	국가	내용
원칙적 금지	중국	은행과 지급시스템은 비트코인 사용 금지 개인들은 자유롭게 거래 가능
	러시아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의 발행, 유통, 거래 등 금지
	아이슬란드	비트코인을 이용한 외환거래행위는 원칙적 금지
ATM 사용금지	타이완	비트코인 ATM은 승인 필요
자금세탁, 불법금융 등 사용 금지	싱가포르	금융중개기관들은 그들 고객의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보고할 의무 부담
	미국	비트코인 거래소 및 채굴자들은 연방정부에 의심사항 보고의무 부담 실제 상거래에서 지급을 위한 비트코인의 사용, 교환 등은 과세상이 될 수 있음.
비트코인 과세	일본	비트코인 거래·구매로 인한 수익에 대해 과세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비트코인의 매각익은 양도소득세 및 소비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 비트코인 관련 사업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짐.
	핀란드	다른 통화로 교환되면서 발생한 자본이익에 과세
	독일	채굴이나 거래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해 과세 (1년 이상 보유 시 예외)
	호주	비트코인 구매 시에는 GST(Goods and Services Tax) 가 적용되지 않고, 비트코인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에만 적용
규정 없음	한국	비트코인에 대해 특별한 규정 없음.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자료 : 김홍기(2014), 遠藤元一(2014), 각 국가별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참고

가상통화 제도화 및 법령개정에 대한 업계 의견

김진화 (코빗 공동창업자, 업종모임 간사)

1. 해외 동향

- 일본 참의원은 지난 해 5월 가상통화를 규제하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과
- 개정 법안은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에 사용되는 재산적 가치’로 정의
- 또한 가상통화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래소’ 등은 정부 등록을 거쳐 영업하도록 규제
- 이 법안은 정부의 공포를 거쳐 1년 이내에 시행
- 일본 의회의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 등이 테러 자금으로 흘러가거나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결제수단으로의 기능을 인정하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
- 유로존에서는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스탬프가 룩셈부르크의 기존 자금결제업자로 공식 등록
-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 제미니이 등이 정부 인가를 획득하고 비트코인 예금, 대출 등 은행이 하는 업무를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받고 영업

2. 국내 동향

- 높은 규제장벽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지체되는 상황
- 정보기술(IT) 전문 로펌 테크앤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투자를 받은 전 세계 스타트업 중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에 한국 스타트업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흥미로운 건 상위 100곳에 포함된 에어비앤비, 우버, 알리페이 등 57곳의 사업모델이 한국의 규제와는 충돌한다는 점이다.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유니콘’(시가총액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들도 한국에선 위법소지가 있는 셈이다. 국내 스타트업 시장의 팍팍한 진입환경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한국일보 7월 13일자 기사 중)
-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소액외환송금업이 신설되는 등 규제가 완화 되었으나, 1) 실제 업무지침 등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2) 법령 개정 중 실험적으로 신기술을 이용한 송금업의 가능성을 타진해 온 핀테크 업체 다수가 금감원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서울 남부지검)
- 규제 일변도에서 경쟁촉진으로 정책 전환이 늦어지는 가운데, 가상통화 분야에서도 제도화 지체되며 혼란 가중되는 상황

3. 가상통화에 대한 정책적 인식의 문제

- 박용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컴퓨터 등에 정보형태로 남아 실물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증표’로 규정되지만,
- 사실상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노드들의 접속단말기에 공통적으로 저장된 분산장부(블록체인) 상에 비가역적으로 등재된 권리 및 내역
- 이용자(혹은 이용자의 위임을 받은 거래소 등)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정보는 위 내역에 표기된 단위를 사용(지불)할 수 있는 프라이빗키에 불과
- 이 분산장부는 사실상의 지구적 클라우드 장부로, 영토성을 주장하기 어려우며 파악도 어려움
- 따라서 의원실 자료에 인용된, “이더리움의 경우 전 세계 투자자의 약 36%가 한국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 등은 확인이 불가능 하며,
- 실제로도 현재 한국의 거래소 등에 보관된 이더 총액은 전 세계 발행량의 3~5% 정도로 추정됨
- 따라서 ‘국부 유출’ 등의 문제제기는 가상통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타당하지 않은 관점
- 현재 한국의 주요 3개 거래소의 수수료는 0.5%에 크게 못미치는 0.1% 내외임
- 투기와 투자사기의 명확한 분별이 필요함
- 전 세계적 가상통화 붐에 편승한 투자사기의 경우 현행 유사수신에 대한 규제 법률만으로도 충분히 제어가 가능
- 일본 시장 역시 정부의 진취적인 입법/제도화로 시장과 산업이 크게 성장한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 비단 가상통화 영역 뿐만 아니라 1) 인터넷은행, 2) 전력산업개편 등에 있어서도 진취적인 입법/제도화의 경험이 있음.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경쟁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할 필요
- 가상통화 투기성 이슈 : 가상통화와 네트워크 경제에 대한 이해
- The best existing analogy for tokens may be the concept of a paid API key. For example, when you buy an API key from Amazon Web Services for dollars, you can redeem that API key for time on Amazon’s cloud. The purchase of a token like ether is similar, in that you can redeem ETH for compute time on the decentralized Ethereum compute network.¹⁾
 암호화화폐의 가장 근사한 비유는 유료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key. 예컨대 아마존 웹서비스의 API키를 금전을 주고 구입하면 이를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 충전할 수 있음. 이더 같은 토큰을 구매하는 것도 유사해서, 분산화된 이더리움 컴퓨팅네트워크에서 이더를 충전해서 스마트계약 응용프로그램을 구동시킬 수 있음

1) Thoughts on Tokens, Balaji S. Srinivasan, CEO of 21.co <https://medium.com/@balajis/thoughts-on-tokens-436109aabcbe>

- Unlike traditional API keys, though, tokens can be transferred to other parti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API key issuer. So, tokens are inherently useful. And tokens are tradeable. As such, tokens have a price.
 통상적인 API키와 달리 (암호화)토큰은 API 발행자의 동의 없이 거래 상대방에게 전송 가능. 따라서 이 토큰들은 내재적 유용성을 띠게 되며 거래가 가능하고 그 때문에 시세를 갖게 됨

4. 소결: 가상통화 및 블록체인 관련 업계 제안

- 4차산업혁명 국면에 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실효적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
- 가상통화 취급업자 및 송금업자의 법적 지위 인정 :
 - 1)국내 서비스에서 위험관리 등을 위해 일정한 법적 지위와 자격 필요,
 - 2)국내 금융기관과의 협업에 법적 자격 또는 근거 필요
 - 3)해외 사업자와의 경쟁 및 파트너십에 필요 조건
- 소비자보호 및 시장 건전성 :
 - 1)소비자 보호 및 시장건전화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 필요
 - 2)업계 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벽과 규제 필요
-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른 클라우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실효적 개정 필요
- ICO(Initial Coin Offering) 추세를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가상화폐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방안

변호사 한 경 수

1. 시작하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가 요즘 뜨거운 감자이다. 더구나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곧 또는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것처럼 회자되고,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유혹을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법률적 규제체계가 없는 상태다 보니 가상화폐에 대한 혼란도 크다.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글로벌 경제시대에 간편한 지급방식과 편리한 자금이체 방식을 갖는 가상화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격변동의 폭이 높고, 교환수단으로서의 강제성이 없으며, 공급 탄력성이 부족하여 투기적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며, 금융기관에 비해 거래소가 영세하여 거래소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자금세탁과 탈세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등 그 부작용도 매우 큰 편이다.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사람들을 전통적인 의미에서 소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국제적인 추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화로 보기 보다는 화폐의 일종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재화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그 결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구매자를 재화등의 소비자 보다는 구매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성이 커 이를 교환수단 또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취득하기 보다는 투자 또는 투기의 수단으로 구매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가격변동성이 큰 재화의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실제 비트코인은 2012년에 약 6,000원이었으나, 2017년 6월에는 약 65만원으로 상승하였고, 2017년 6월에는 약 290만원으로 폭등하였다가 한달 뒤에는 약 240만원으로 하락하는 등 등락폭이 매우 크다. 이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가상화폐를 새로운 유형의 화폐 유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투기 또는 투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가상화폐 구매자를 소비자와 유사한 지위로 보아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가상화폐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와 불법다단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 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등락폭이 크다 보니, 현재 가상화폐의 구매자들은 대부분 교환수단이나 지급결제수단이 아니라 투기나 투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 나. 이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최근 유사수신이나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구매자들을 모집하는 행위가 성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하였다.

수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2014. 9.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강남 소재 'B코인'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를 판매하면서 "홍콩 본사에서 만든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B코인을 구입하면 그 가치가 단기간에 수배, 수십배 상승하여 막대한 투자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수천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0억 원을 수신한 다단계 사기업체 'B코인'의 국내 대표 등 주범 6명을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7. 5. 2.과 2017. 6. 8. 및 2017. 6. 20. 구속기소하였음. 경찰청(청장 이철성)이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편승해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서민층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 사업 및 채굴사업 등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라고 설명한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유사수신 사기사건은 총 103건 발생했다며 부산경찰청 등이 적발한 3건을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개의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임의로 가격을 책정한 후 코인마켓 캡(코인 거래 순위 사이트)에 등록해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661억원을 편취한 다단계 사기범 39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올해 5월 17일 부산경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에 적용한 혐의는 사기(형법), 유사수신행위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타났다.

다. 가상화폐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의 적용이 가능하나, 단순히 그동안 가상화폐의 가치상승폭에 대해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정도로 설명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는 다소 어렵다.

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자.

(1) 먼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填)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2)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현재와 같이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를 재화로 보든 화폐로 보든 간에 거래소 자체가 가상화폐 판매액 이상을 보장하면서 향후 다시 이를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어렵다.

마. 방문판매법상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나 미등록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먼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의 정의를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 등’이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하는 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을 화폐라고 본다면 가상화폐 등의 판매를 하는 조직은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참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2013. 7. 23. 서버와 BTCST를 상대로 “BTCST의 사업내용은 사기이자 폰지스킴이며, 서버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자의

비트코인을 사용하였으며 개인목적 을 위해서 유용했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텍사스주법원은 “비트코인은 투자계약상 금전에 해당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사용되거나 달러·유로·엔·위안과 같은 전통적인 화폐와도 교환할 수 있고, 각종 비용의 지출에 사용할 수도 있으며, 비트코인이 금전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대한 유일한 제한은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받는 장소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 뿐”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하였다(SEC v. Shavers, No. 4:13-CV-416, 2013. 8. 6.).

(2) 다음으로 사실상 금전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 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위와 같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화로 보지 않는다면,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가상화폐를 구입할 소비자를 유인해서 구매하도록 하면 각종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금전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 판매방식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방문판매법상의 판매방식은 소비자가 재화등을 판매하는 장소에 찾아가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소비자를 찾아오거나 전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하는 등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불러 일으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판매방식에 비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다단계판매방식은 판매방법 자체가 사행성과 연고판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판매방식과는 큰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변동이 매우 커서 투기 또는 투자의 대상으로 기능하는 이상, 적어도 특수거래 유형에 속하는 방문판매법상의 판매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소비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사업자 신고 이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태이다. 2017년 6월 기준 국내에서의 1일 총 거래금액이 약 1조 3,000만원에 달하는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소비자등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2014년 마운트곡스 사의 해킹과 내부 관리자의 횡령 등으로 인해 당시 한화 약 5,300억원이 증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약 12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이와 같은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적어도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해당 정부 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아야 할 것이다.

투기 자산인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필요성

이종근 수원지검 부장검사

1. 현 상황 및 문제점

- 전자금융거래법¹⁾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현재의 가상통화들은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정화폐가 아니고, 가상통화를 규정하는 법규가 없음
- 또한 최초의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이더리움클래식, 리플코인, 지캐시, 어그코인, 라이트코인 등 수많은 가상통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등 기타 IT기술만 있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향후 더 많은 가상통화들이 만들어져 수많은 가상통화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음
-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012.경 6천원에서 2017. 5. 말경 490만원까지 급등하였으나 2017. 7. 16.기준 220만원대로 폭락하였고,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다른 가상통화들의 가격도 따라서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투매 현상까지 등장²⁾하여, 가상통화가 건전한 투자의 대상이기 보다는 투기 자산으로서 악용되어 가상통화 거래시장의 불건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 가상통화의 거래량을 살펴보면, 2017. 6. 29. 기준 코인힐스³⁾에 따르면 한국 소재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의 거래량 순위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전 세계 거래량의 1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⁴⁾되어, 한국 소재 가상통화 거래소들에서 이루어지는 가상통화 거래량도 급증하여 막대한 규모임
- 이처럼 현재 가상통화는 화폐로서 기능하기 보다는 투기 자산이 되고 있고, 다단계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도 악용⁵⁾되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가상화폐 광풍에 휩쓸리고 있어 과거 네덜란드의 툴립투기와 같이 툴립버블이 재연되면 막대한 서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음
- 게다가 가상통화는 실물없이 사이버상으로 거래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성상 음란물 사이트 운영에서부터 마약 거래에 이르기까지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⁶⁾되고 있고, 최근 불법적인

1) 전자금융거래법(법 제2조 제15호)은 전자화폐에 대하여 ① 2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50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이용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5개 업종 이상일 것, ②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되어 발행할 수 있을 것, ③ 발행자에 의하여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전자화폐에 해당한다고 규정

2) 2017. 7. 15.자 글로벌경제신문 기사「가상화폐 시장 아비규환 비트코인 '묻지마 투매' 등장」

3) 전 세계 가상통화 거래소의 순위 및 가상통화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4) 2017. 6. 29.자 문화일보 기사「한 가상화폐 거래량 세계 1위 '과잉 우려' 빨간 불」

5) 2017. 7. 13.자 중앙일보 기사「비트코인 뜨자, 다단계 '유사 코인' 우후죽순」

6) 2017. 5. 27.자 연합뉴스 기사「비트코인 이용 범죄 '성행' 익명성 보장 악용」

자금세탁의 수단⁷⁾이나 해킹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⁸⁾이 되기까지 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한편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는 가상통화 거래 중개로 막대한 수수료를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에서 실제 고객정보가 유출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는 등 해킹 및 보이스피싱 등 사고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가상통화 거래소가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인·허가나 등록절차 없이 설립되고 있음
- 이에 금융감독원은 2017. 6. 22. '가상통화 투자시 유의사항'을 발표⁹⁾하면서,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으며, 다단계 유사코인에 유의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등의 사고 발생시 적절히 책임을 부담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당부하였음

2. 가상통화를 악용한 다단계 사기범행 단속 현황(수사기관)

- 수사기관에서는 2015.년부터 가상통화를 악용한 다단계 사기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범을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하는 등 엄히 처벌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다단계 사기 범행은 전국적인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막대한 실정임

【가상통화 판매 빙자 다단계 사기범행 단속 현황】

순번	가상통화	범행방법	수사결과	선고결과
1	A코인	'15. 4.~'16. 2.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유사 가상통화인 'A코인'을 구입하면, 비트코인과 같이 가격이 급등하여 단기간 내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다단계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합계 178억 원 상당을 편취	주범 5명 구속 기소	징역 6년 ~ 1년 6월
2	B코인	'14. 12.~'16. 5.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인 'B코인'을 100원에 구입하면 100,000원까지 올라 큰 돈을 벌 수 있고, 다단계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합계 294억 원을 편취	주범 5명 구속 기소	징역 5년 ~ 징역 2년 6월

7) 2017. 5. 31.자 화이트페이퍼 기사「비트코인 자금세탁 시도 보이스피싱범 달미」

8) 2017. 7. 4.자 동아일보 기사「가상통화 거래소 '빗썸', 3만명 고객정보 유출」, 2017. 7. 4.자 ZD코리아 기사「보이스피싱, 비트코인도 노린다」, 2017. 7. 12.자 서울경제 기사「2차 피해 호소 속출에 빗썸, 뒤늦게 인증 강화」, 2017. 7. 11.자 IT조선 기사「빗썸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 신청 웹사이트 오픈」

9) 2017. 6. 22.자 매일경제 기사「금융감독원, 가상화폐 투자시 유의사항 발표」

3	C코인	'15. 5.~'16. 6.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인 'C코인'을 구입하면 단기간 내에 수배 가치 상승하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다단계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함께 88억 원을 편취	주범 3명 구속 기소	각 징역 5년
4	D코인	'15. 1.~'15. 11. 비트코인 유사 'D코인'을 구입하면 단기간 내에 수배 가치 상승하고 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단계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함께 86억 원을 편취	주범 5명 구속 기소	징역 4년 6월 ~ 징역 1년 6월
5	E코인	'15. 9.~'16. 1.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인 'E코인'을 구입하면 6개월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다단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58억 원을 편취	주범 5명 구속 기소	징역 4년 ~ 징역 1년 2월
6	F코인	'15. 10.~'16. 9.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인 'F코인'을 구입하면, 약 3개월만에 8배 가치 상승하고 쇼핑몰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다단계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함께 1,700억 원 상당을 편취	주범 4명 구속 기소	징역 3년 6월 등 (대부분 재판계속 중)
7	G코인	'15. 1.~'15. 6. 가상통화인 G코인을 99,000원에 구입하면 다음날 110,000원을 입금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여 69억 원 상당을 수신	주범 구속 기소	징역 4년
8	H코인	'14. 9.~'17. 3.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인 'H코인'을 구입하면, 단기간 내에 수배 가치 상승하고,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다단계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함께 145억 원을 편취	주범 6명 구속 기소	재판계속 중
9	I코인	'15. 7.~'15. 9.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인 'I코인'을 120만 원에 구입하면 134만 원을 벌 수 있고, 다단계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함께 6억 원을 수신	주범 2명 불구속 기소	징역 1년 ~ 10월

3. 각국의 규제현황

○ 미국

- 미국 뉴욕주 법률은 당국의 인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활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미국 뉴욕주 법률 〉

– REGULATIONS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SERVICES, PART 200.
VIRTUAL CURRENCIES

Section 200.3 License

(a) License required. No Person shall, without a license obtained from the superintendent as provided in this Part, engage in any Virtual Currency Business Activity.

– 인가가 필요하다.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가상통화와 관련된 어떠한 영업활동에도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중국

– 2016년 말경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자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 투자금 인출을 금지하는 행정규제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중국의 비트코인 투자금액이 2016년 11월 대비 100분의 1로 감소되었음

○ 일본

– 2014년도에 일본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되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국에 등록된 거래업자 이외에는 가상통화 거래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법률개정은 규제의 정도가 약해 가상통화 투기 및 투자사기를 방지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일본 법률 〉

– Amendment of Payment Services Act(Article 2-5)

Virtual currency exchange operators shall meet capital/financial rerequirements and register with the national government.

– 가상통화 거래업자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당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러시아, 인도네시아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 한국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5호에서 전자화폐의 정의와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상통화에 관한 법률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임

4. 긴급대책의 필요성

- 가상통화 투기 및 투자사기가 서민경제의 붕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검토될 수 있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투자주의보를 발표한 바와 같이 가상통화의 투기성 및 투자 위험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의를 촉구할 필요성이 있음
 - 입법을 통하여 가상통화를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입법방안 〉

- 가상통화 거래소 개설시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금을 예치하거나 해킹 등 사고 발생시 손해 전액을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며, 가상통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
- 가상통화 거래시 가상통화가 화폐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는 등 화폐로 오인하게 하거나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등 기망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등 가상통화 거래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 국세청
 - 가상통화는 투기 자산의 성격이 강하므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수사기관
 - 가상통화를 다단계로 판매하는 행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적 방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사기) 등 가상통화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 방안이 검토되었고, 현재 이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되고 있음

5. 가상통화 규제 반대 주장에 대한 검토

- 가상통화가 화폐로서의 기능한다는 주장
 - ☞ 모건스탠리는 2017. 7. 12.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가치는 250% 넘게 급등하였음에도 결제를 허용한 온라인 상거래 업체의 수는 오히려 5곳에서 3곳으로 줄었고 비트코인 수용이 사실상 없다며,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에 불과하고, 합법 통화로서의 잠재력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거래 비용 상승 및 거래 속도 둔화도 비트코인이 화폐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¹⁰⁾하였음

10) 2017. 7. 13.자 뉴스1 기사 「모건스탠리 “비트코인, 투기 자산의 전형, 화폐 아니다」, 2017. 7. 13.자 연합뉴스 기사 「비트코인 가격 치솟자 결제 받아주는 업체 거의 없어」

- 가상통화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고, 선부른 규제가 태동한 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일 수 있으므로, 규제는 최소화하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방법이라는 주장
 - ☞ 현재까지 아무런 규제 없이 가상통화가 거래되었었던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폐로서의 성격보다는 투기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고, 다단계 사기 범행, 마약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해킹,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
- 가상통화를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오히려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해 주어 투기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 ☞ 가상통화 관련 영업활동에 대하여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기 자산으로서의 악용을 규제한다는 의미임
 - ☞ 오히려 가상통화 관련 영업활동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가상통화가 투기 자산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이 자료는 토론자의 개인 의견이고, 토론자가 소속된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토론문

채원희 | 가상화폐피해자모임 대표

1. 본인 소개 및 피해 사례

- 저는 인터넷 카페에서 가상통화 등 금융투자 사기피해방지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채원희 라고 합니다. 경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일을 하게 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이일을 하게 된 것은 2013.10.04 경북 문경에서 M업체라는 금융투자 사기에 속아 650만 원을 투자하게 된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지인의 거둬진 권유로 M업체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의 사업 설명회 등에 수차례 참석하였는데,

“M업체는 말레이시아의 중견그룹이 운영하는 SNS로, 말레이시아 판 페이스북을 표방하고, 장차 중화권 10억 인구가 사용하는 SNS로 발전하여 페이스 북을 능가하게 될 것이며, 이 SNS 광고권을 650 만원을 주고 구입하면 그 광고권은 살아있으면서 GRC라는 가상통화를 300만원 어치 받게 되는데, 이 GRC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크루즈 여행, 부동산, 자동차, 전자제품, 생필품 등 모든 쇼핑도 가능하다. 절대 내리지는 않고 오르기만 하다 일정 단위에 도달하면 2배수로 숫자가 분할되는 걸 연 2~3회 반복을 하여 1년 지나면 2,400만원으로, 다시 또 1년 지나면 9,600만원. 1억 9천2백 만원 ...으로 계속 상승하여 누구나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백만장자로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 고 선전하였습니다. 또 절대 사기, 유사수신이 아니고 다단계도 아니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지하고 있다”고 선전하였습니다.

- 처음 설명을 들을 때는 수백 명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전국에 수십여 곳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니 불법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에게 은행대출이나 심지어는 가입한 보험금의 대출을 받고, 살던 집의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투자하였다는 사례 발표를 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모습을 보고, 노후의 불안함을 부추겨 사기행각을 벌이는 집단이라는 판단을 하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 본인이 직접 가입시킨 회원의 투자금에서 10%의 수당을 받고 하위 회원의 가입실적에 따라 상위 6대까지 후원금이 지급되는 등 전형적인 금융 다단계 조직이었고,

- 투자금을 다른 수익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규회원의 가입금을 받아 상위 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이후, 이들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인터넷카페에 글을 올리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2. 피해 사례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정보교환이나 상담을 하며, 알게 된 몇 가지 피해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M업체

서울에 거주하는 K 모씨의 사례인데요, 30년 전 결혼하여 3자녀를 두고 단란하게 살던 이분의 가정에 불행이 시작된 것은 2014년 말, 부인이 지인의 권유로 M업체 서울 모 센터를 방문하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입금 통장을 보여주며 고수익을 자랑하는 상위 리더들의 말에 넘어가, 처음 65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4박5일의 말레이시아 본사 견학 여행, 매월 1회 씩 가게 되는 1박 2일의 콘도 단합 대회 참가 등으로 완전 세뇌된 부인은, 남편 몰래 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 대출 등을 받아 5,000 만원을 투자하며 본격적으로 주변 지인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활동하게 되었고,

이를 말리는 남편과의 잦은 다툼으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상통화를 표방하는 금융투자사기에 빠지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나. U코인

대구에 거주하는 77세의 김모 할머니 사례인데요, 이 할머니는 수십 년 전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지인이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M업체와 U코인 등 가상통화 투자 금융 다단계센터였습니다. 평소 자주 들리는 곳으로 주변 지인들이 하나 둘 가입을 하게 되자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를 하게 된 것이 M업체에만 약 2억원 정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고, SNS가 뭔지도 모르는 이 할머니는 지인 관계인 센터장의 “큰 돈 벌게 해 준다”는 말에 혹하여 한번 두번 계속하다보니 거액을 건네게 되었으나 대다수 현금으로 전달하여 어떤 영수증이나 계약서도 없고 오로지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주는 가상의 숫자를 보고 재산이 늘어났다고 믿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내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어 환전이 잘 되질 않고 있으나 원금 회수를 위하여 센터장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그 센터에서 만난 또 다른 김모 여인이 “자신이 책임진다”며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U코인에 투자를 유도하자, 2016. 6월~ 7월 사이 4,200 만원을 건네주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후 소개자 김모 여인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자신은 단순히 소개만 하였다고 하며 아예 연락조차 끊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6.08.15 서울 지방 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U코인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구속 송치를 하였다는 언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다. B코인

다음 사례로 여러 자매 전부가 B코인과 M업체에 빠져 1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이를 말리는 가족과 갈등을 빚다가 남처럼 지내고 있는 수도권 S 주부의 사례입니다.

40대 중반의 나이로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S 주부의 언니는 B코인과 M업체 센터에서 활동하는 지인이 투자를 하면 계속 2배수로 투자금이 불어나고 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평생 연금처럼 돈을 꺼내 쓸 수 있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여, 노후에 대한 걱정과 아들과 함께 계속 지낼 수 있으리란 간절함에 보험금 대출과 임대한 주택의 보증금을 올려 받은 돈까지 더하여 M업체와 B코인에 수천 만 원을 투자하였고 초기에 몇 차례 소액의 환전이 이루어지자 전산 상에 있는 늘어난 가상의 숫자를 맹신하여 다른 자매들까지 총 1억 여 원을 투자케 하였으나,

B코인은 최근 신규 가입자가 없어 환전이 되질 않고, M업체 또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압수수색에서 원화를 비롯한 거액의 외화 및 관련 계좌에 대한 동결로 환전이 이뤄지질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들 조직의 세뇌에 넘어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 이를 말리는 A주부와 다른 자매들과의 갈등으로 평소 다정하던 가족관계가 이젠 서로 연락조차 않고 지낸다고 합니다.

수원지검 형사 4부에서는 6/22 B코인 한국 지사장 A씨등 6명을 사기 및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6월 22일자 보도 발췌문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가상화폐 투자하면 돈 번다” 140억원 가로챈 다단계 조직 적발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과 전국 10곳에 지점을 차린 뒤 “B코인을 구입하면 막대한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2000차례에 걸쳐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홍콩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인 B코인을 구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개당 100원인데 본사에서 해킹방지 기술을 이용해 10억개만 발행을 해서 구입하면 가격이 수배, 수십배 상승한다. 바로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후략

* 시간이 허락한다면 사례 한 가지 더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여고 3학년 수험생인데 엄마가 M업체에 빠져 모든 가족이 걱정에 빠져 있다는 사연을 7/13 인터넷 카페 댓글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그 댓글입니다.

- 저희 엄마도 대구 M업체 집단에 빠져서 저희 가족 말 아무것도 안 듣고 글쓴이 분 어머니랑 똑같은 말을 해요. 여기 운영자 믿을 거 못된다면서요. 아무리 제가 제발 이만 거 하지 말라고 말려도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면서 뭘 아냐면서 그래요.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 믿지 말라면서요. 진짜 소름끼치게 엄마가 무서워요. 사이버 종교에 빠진 것처럼요. M업체에 대한 맹신이 너무 강해요. 어떻게 하면 그 사기 집단에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아직 학생이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서럽고 무섭기만 해요.

-중략-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전 수험생이라 한창 공부에 신경써야하는데 문뜩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 괴로워요. 아빠는 신경 쓰지 말고 대학까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 말라고, 너희가 대학 나오고 취업 좋은 곳 하는 게 아빠 도와주는 거라고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가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을 하는 아빠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쓸쓸하게 느껴져서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

3. 결론

이처럼 가상통화를 표방하며 금융 투자사기를 일삼는 조직들에게 피해를 보는 주 대상은 형편이 어렵고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서민들로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원금보장과 허황한 고수익을 약속하며 하위회원의 가입실적에 따른 수당을 몇 단계에 걸쳐서 지급하는 다단계 수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단 가입이나 투자를 하게 되면 자신의 원금 보전이나 지속적인 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변 지인들을 계속 끌어 들이는 가해자 내지는 공범자로 변해 상위 조직원들과 이해를 공유하게 되므로 상위 조직원들에 대한 공판에서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단계 조직운영,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에 대한 거짓 증언과 집단적인 선처 탄원서 제출로 사법정의를 왜곡되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계속 피해를 키워 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가상통화를 내세운 금융투자 사기 조직은 가입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해야 한다면서 주민번호와 여권, 신분증 사본 등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개연성마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미비한 법규로 인한 제한적인 처벌로는 불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고 가상통화에 대한 무모한 투기를 지금처럼 방지한다면 17세기 네덜란드의 튜립 투기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연되지 않으리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 후원방문판매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통신판매, 전자 상거래의 방식에 의해서도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는 금전거래 또는 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방판이나 전화권유, 다단계 방식 등 모든 형태의 불법 금융투자 사기사건의 경우 단순 권유나 소개자의 경우라도 상습적인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만 가상 통화 투기, 금융투자사기로 인한 서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가상통화를 다단계로 판매하는 것과 사기적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처벌되거나 수사하여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투기적인 가상통화를 판매하거나, 인가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적인 가상통화는 인가자체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관련 법 제, 개정과 보완을 통하여 서민들의 민생침해 방지와 건전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하면서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7.18